정책방안 위의 정책부재로 정책적 효과가 낮은 수준이다.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a Multicultural Era and Policy Implications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 사회는 국내외 인구이동의 증가, 외국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국제결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 나,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ㆍ제도의 실효성 확보, 생활보장과 인권옹호의 법적 근거 부재, 부처별 정책의 중복, 가족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바 있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부부의 의사결정은 경제생활ㆍ재산과 관련된 것은 한 국인배우자가 독단적으로 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은 경제 및 자녀문제가 높았다. 결혼해서 적응하는데 소요기간은 1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결혼 후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이었다. 지난 1년간 한국인배우자에 의한 결혼이민자의 폭력 발생률은 47.8%로 폭력에 대응하여 그냥 참고 산다는 비율이 16.7%로 가장 높았다. 취업비율은 결혼이민자가 19.4%, 한국인배우자는 90.6%로 단순노무직 종사자와 임시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과 자녀양육·가사 부담 이 지적되었다. 가구부채 비율은 45,3%로 주된 부채원인은 주거비 · 주택마련이었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결혼이민자가 23,0%, 한국인배우자는 27.3%이었고, 이 중에서 치료 때문에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각각 85.9%, 90.9%이었으며 치료를 중단한 비율은 55,3%와 41,4%이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주된 양육자와 방과 후 돌봄형태는 가족이 높았으며,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은 한국어소통능 력과 양육비·교육비 지출 등이었다. 다문화가족의 노부모 부앙비율은 43,9%이었고, 가족부양의 어려움은 언어소통과 노인수발 등이 었다.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한국어교육이 54,5%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부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보육시설이 21,2% 로 가장 많았다. 정책방안으로는 다문화기족의 의사소통 지원방안.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사후적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의 기본생활 보장 및 소득보장 강화, 다문화가족의 기본의료보장,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지원 확대, 가족부양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우리 사회는 국제적 지위향상과 세계화에 따 른 국가 간 물적 · 인적 교류 활성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공유의 확산 등으로 국내외 인 구 이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저 출산 · 고령화를 맞아서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

하, 도시와 농촌간 인구이동, 그리고 여성의 고 학력 및 경제활동의 증대로 초혼연령이 상승하 고 독신미혼여성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만혼화 현상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 및 사 회적 배경 하에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감소 및 가치관 변화,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농촌 과 도시 저소득층 남성들은 외국 여성과 결혼하 는 국제결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 회현상의 지속으로 인하여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제결혼은 1990년 4.710건에서 2000년 12.319건으로 10년간 2.6배 증가하였고, 2005 년에는 43,121건, 2007년에는 38,491건으로 2000년에 비하여 3.1배에 이르고 있다. 전체 결 혼대비 국제결혼 비율은 1990년 1.2%에서 2007년에 11.1%를 차지하여 다문화가족은 상 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 계청, 각 년도). 다문화가족의 자녀 또한 2006년 25,000명에서 2007년 44,000명, 2008년에는 58.000명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행정 아전부, 각 년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 · 제도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 률」,「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국적법」,「출입국 관리법 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08년 3 월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 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8년 10 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 원 강화대책 발표 등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모색되고 있다.

그럼에도 다문화가족을 위해 제정된 법ㆍ제 도의 실효성 확보, 다문화가족범위와 기본적인 이념 등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결혼이민 자의 생활보장과 인권옹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은 부처별로 정책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 며 다문화가족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부족하고 보건 · 복지 · 가 족영역간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적 효과 또한 낮 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고는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복지욕 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의 가 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단위의 정책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자료는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바 있 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를 활용하였다. 단 본 고의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결혼이민자와 한국 인배우자로 결합된 가족으로 한정하였다.

2. 다문화가족 실태^{2) 3)}

1) 결혼생활

(1) 부부 의식결정권 및 부부갈등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은 가족 내에서 부부의 권력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지표로서 의미가 있

부부가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는 결혼이민 자의 경우는 경제문제가 30.7%로 가장 높았고,

리는 주로 부인이 결정하고 부동산 및 재산관리

등은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것(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

사』, 2006)과는 반대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자녀문제(26.0%), 배우자의 부모 · 형제자 매와의 관계(20.6%). 가사 및 육아부담(20.1%) 순 으로 높았다. 평균은 경제문제 3.06점, 자녀문제 3.19점, 가사 및 육아부담 3.23점, 배우자의 부 모 · 형제자매와의 관계 3.33점 순으로 나타났다.

(2) 결혼생활의 적응과 어려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모두 공통적으 로 결혼하기 전에 기대한 것과 실제 가장 차이 가 나는 부분으로 본국과 한국의 문화차이를 응 답하였다. 또한 생활환경, 한국의 경제상황, 배 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등도 결혼 전 · 후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응답하였다.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가 결혼해서 적 응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 1년 미만이

표 1.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의사결정권 비교

(다의 % 명)

| | | | | | | | (건규. 70, 당) |
|--------|------------|------------------|---------------|---------------|-----------------|----------------|----------------------|
| | 구분 | 일상생활비 지출 및 관리 | 투자 및 재산 관리 | 주택 매매 및 이사 |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 | 부부의 취업 및 이직 | 양가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지원 |
| _ | 내가 혼자 | 11.0 | 3.8 | 1.6 | 6.8 | 3.5 | 3.1 |
| 결 혼 | 내가 보다 많이 | 11.5 | 4.6 | 3.4 | 15.1 | 3.2 | 4.2 |
| 혼 이 | 부부함께 결정 | 35.0 | 34.7 | 45.0 | 63.2 | 51.7 | 56.7 |
| 민 | 배우자가 보다 많이 | 20.7 | 24.5 | 21.4 | 8.1 | 20.2 | 17.5 |
| 자 | 배우자 혼자 | 21.9 | 32.3 | 28.7 | 6.9 | 21.5 | 18.5 |
| | 계(수) | 100.0(1,075) | 100.0(1,039) | 100.0(1,010) | 100.0(1,005) | 100.0(979) | 100.0(999) |
| 한 | 내가 혼자 | 24.2 | 35.1 | 29.5 | 9.3 | 21.3 | 20.9 |
| 국 | 내가 보다 많이 | 24.6 | 23.4 | 18.1 | 13.7 | 17.8 | 14.9 |
| 인 | 부부함께 결정 | 34.1 | 33.3 | 45.9 | 61.4 | 55.1 | 57.2 |
| 배 | 배우자가 보다 많이 | 10.3 | 4.3 | 3.3 | 12.5 | 3.5 | 4.1 |
| 우 | 배우자 혼자 | 6.8 | 3.9 | 3.2 | 3.1 | 2.3 | 2.9 |
| 자 | 계(수) | 100.0(976) | 100.0(946) | 100.0(908) | 100.0(905) | 100.0(895) | 100.0(907)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30 보건복지포럼 (2009. 5.) 이 달의 초점 31

다.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공통적으로 비 슷한 권력구조를 보여주었는데 자녀양육 및 교 육문제, 부부의 취업 및 이직, 양가부모님에 대 한 경제적 지원 등은 비교적 부부가 함께 결정 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일상생활비 지출 및 관리, 투자 및 재산관리, 주택매매 및 이사 등 경 제생활 또는 재산과 관련이 높은 것을 결정하는 데는 한국인배우자가 결혼이민자보다 독단적 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 는 일반가족과 비교하면 일상생활비 지출 및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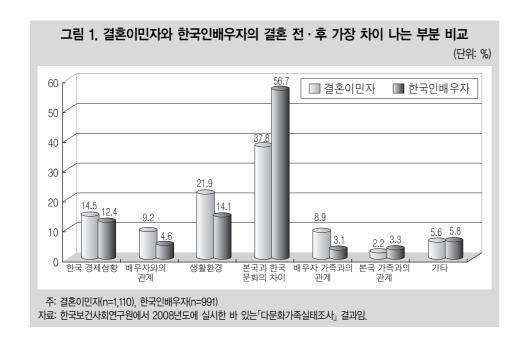
¹⁾ 본 조사는 2008. 8, 18~9. 6일 기간 중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몽골, 인도 출신의 결혼이 민자와 한국인배우자로 조사결과 결혼이민자 1.196명, 한국인배우자 1.037명이 조사완료 됨.

²⁾ 결혼이민자의 일반적 특성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60,9%로 농ㆍ어촌보다 높았으며 98,2%가 여성으로 구성되었고 평균연 령은 30.74세로 한국인배우자와 평균 10.64세의 연령 차이를 보였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이 78.1%이었고, 가구주와의 관계 는 98.5%가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이었고 가족유형은 핵가족으로 구성된 비율이 59.0%임.

³⁾ 한국인배우자의 일반적 특성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59.3%로 농·어촌보다 높았으며 99.7%가 남성으로 구성되었고 평균 연령은 41.3세이었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이 84.4%이었고, 한국인배우자의 86.6%가 가구주에 해당되었고 가족유형은 핵가 족으로 구성된 비율이 57.4%임.

| | į | 표 2. 결혼이 | 민자와 한국역 | 인배우자의 - | 부부갈등 정도 | E 비교 | |
|--------|-----------|---------------|---------------------|--------------|--------------|-------------------|------------------------|
| | | | | | | | (단위: %, 명, 점) |
| | 구분 | 경제문제 | 자녀문제 (교육 · 생활방식) | 가사 및 육아부담 | 부부관계 | 내 부모 · 형제 자매관계 | 배우자의 부모 · 형제자매와의 관계 |
| | 매우 그럼 | 8.4 | 6.8 | 5.4 | 3.6 | 4.6 | 7.8 |
| 결 | 약간 그럼 | 22.3 | 19.2 | 14.7 | 8.9 | 8.3 | 12.8 |
| 혼 | 보통 | 37.0 | 38.2 | 44.0 | 44.9 | 37.4 | 38.4 |
| 0 | 별로 그렇지 않음 | 20.5 | 22.1 | 23.5 | 27.5 | 24.7 | 20.9 |
| 민 | 전혀 그렇지 않음 | 11.9 | 13.6 | 12.4 | 15.1 | 25.0 | 20.1 |
| 자 | 계(수) | 100.0(1,0469) | 100.0(982) | 100.0(1,005) | 100.0(1,029) | 100.0(1,033) | 100.0(1,043) |
| | 평균 | 3.06 | 3.19 | 3.23 | 3.41 | 3.57 | 3.33 |
| | 매우 그럼 | 9.2 | 5.7 | 3.9 | 2.2 | 4.2 | 2.5 |
| 한 | 약간 그럼 | 23.7 | 18.8 | 15.1 | 9.3 | 12.8 | 8.6 |
| 국 | 보통 | 35.1 | 38.6 | 44.0 | 40.3 | 38.0 | 38.5 |
| 인 배 | 별로 그렇지 않음 | 20.8 | 24.7 | 24.2 | 30.3 | 26.5 | 28.1 |
| 우 | 전혀 그렇지 않음 | 11,1 | 12.2 | 12.8 | 17.8 | 18.5 | 22,3 |
| · 자 | 계(수) | 100.0(942) | 100.0(887) | 100.0(889) | 100.0(936) | 100.0(935) | 100.0(932) |
| | 평균 | 3.01 | 3.19 | 3.27 | 3.52 | 3.42 | 3.59 |

주: 부부갈등정도는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부부갈등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라고 응답한 비율은 결혼이민자가 60.1%, 한국 인배우자는 66.4%로 부부 모두 과반수이상이 해당되었으며, 특히 6개월 미만은 결혼이민자 와 한국인배우자 각각 33.9%, 37.7%로 가장 높 았다. 이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언어, 문화 및 교육·훈련 등 적응력제고 프로그램이 조기 에 투입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족의 결혼 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2%였고, 다음은 한국생활의 적응부담감, 자녀문제 순으로 높았다. 또한 한국인배우자도 결혼이민자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이외에 결혼이민자는 배우자가족과의 관계를,한국인배우자는 경제적 측면을 결혼 후의 가장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3) 부부폭력

지난 1년간 한국인배우자에 의한 결혼이민자

의 폭력발생률은 47.8%로 부부 2쌍 중 한 쌍은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 자가 한국인배우자에게 경험한 폭력유형은 모 욕적인 말을 하여 괴롭히는 정서적인 폭력이 2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물건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신체적 폭력이 25.3%로 높았으며, 부 부간에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방임도 22.1%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자유롭게 외출을 못하게 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빼앗는 인권침해 수준의 폭력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배우자가 결혼이민자에게 받은 폭력은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방임이 26.5%, 물건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신체적 폭력이 22.4%, 모욕적인 말을 하여 괴롭히는 정서적 폭 력이 20.3%이었고, 자유롭게 외출을 못하게 하 는 폭력도 10.7%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부부폭력 경험비율은 2.7~27.9% 범위로 언어 · 정서적 폭력부터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 대, 방임, 성 학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 | 표 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결혼 후 적응까지 소요기간 비교 | | | | | | | | | |
|---|--|------|------|------|-----|--------------|--|--|--|--|
| | (단위: %, 명) | | | | | | | | | |
| 구분 |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계(수) | | | | | | | | | |
| 결혼이민자 | 33.9 | 26.2 | 19.4 | 11.9 | 8.6 | 100.0(1,072) | | | | |
| 한국인배우자 37.7 28.7 21.0 8.6 4.0 100.0(954) | | | | | | | | | |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 | | | | | | | | | |

⁴⁾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한국인배우자는 외국인과 결혼해서 겪는 어려움으로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1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배우자의 비자갱신·국적취득문제, 배우자 한국생활 지원 부담감, 이민자에 대한 편견·차별, 자녀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설동훈외,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6). 본연구와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한국인배우자의 결혼후 가장 큰 어려움은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음.

⁵⁾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하면 2008년 한국인배우자에 의한 결혼이민자 폭력발생률은 38.8%로 조사되어 본 연구결과가 9% 포인트 높았는데, 이는 폭력의 측정척도, 범위 그리고, 조사대상 기간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이해됨(김승권 외,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 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표 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 리 결혼 후 가장 | 큰 어려움 비교 (단위: %, 명) |
|----------------------|--------------|-------------------------------|
| 구 분 | 결혼이민자 | 한국인배우자 |
| 어려움 없음 | 4.9 | 11.5 |
| 어려움 있음 | 95.1 | 88.5 |
|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 (29.2) | (27.4) |
| (한국생활 적응 부담감) | (17.9) | (15.6) |
| (자녀문제) | (15.1) | (12.6) |
| (배우자와 본인가족간의 관계) | (2.7) | (6.2) |
| (본인과 배우자가족과의 관계) | (8.4) | (2.6) |
|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 (2.7) | (6.2) |
| (본인의 바자갱신 및 국적취득문제) | (1.7) | (3.6) |
| (경제적 측면(용돈, 생활비 등)) | (6.3) | (8.8) |
| (취업관련 어려움) | (2.6) | (1.2) |
| (배우자와의 갈등) | (2.9) | (2.2) |
| (가사) | (1.3) | (0.4) |
| (본인 건강문제) | (1.6) | (1.0) |
| (기타) | (2.7) | (0.7) |
| 계(수) | 100.0(1,094) | 100.0(975)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의

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결혼기간이 오래 될수록 한국인배우자에 의한 결혼이민자의 폭력 발생이 높 았으며 동비율은 경제적 착취 를 제외한 모든 폭력유형에서 높았다.

부부폭력을 경험한 부부 중에서 부부 폭력에 대응하는 방식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결혼이민자는 '그냥 참고산다'는 비율이 높은 데 반해한국인배우자는 '말로 설득하여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태도를 보였다.

| | 표 5. 결혼기간 및 폭력유형별 결혼이민자의 폭력 발생률 | | | | | | | | |
|--|---|--------|--------|--------|--------|------|-----|---------|--|
| | (단위: %, 당 | | | | | | | | |
| | 구분 | 폭력 발생률 | 정서적 폭력 | 신체적 폭력 | 경제적 착취 | 방임 | 성학대 | (분석대상수) | |
| | 전체 | 47.8 | 28.9 | 30.6 | 12.6 | 19.6 | 6.6 | (1,157) | |
| 결 | 2년 미만 | 36.6 | 19.9 | 24.7 | 10.4 | 14.9 | 4.8 | (336) | |
| 호 | 2~4년 미만 | 50.8 | 26.1 | 33.9 | 16.3 | 20.8 | 5.5 | (307) | |
| 기 | 4~6년 미만 | 50.4 | 34.8 | 34.1 | 14.8 | 22.2 | 9.6 | (135) | |
| 간 6년 이상 58.9 42.2 33.8 12.4 22.9 9.1 (275) | | | | | | | | | |
| 자료: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다문화기족실태조사」 결과임. | | | | | | | | |

⁶⁾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부부폭력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 중에서 배우자의 폭언·폭행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배우자를 설득하여 해결' 한다가 1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싸워서 고친다', '힘들어도 그냥 참고 산다', '별거 또는 이혼하자고 한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설동훈 외, 2006). 본 연구결과는 부부폭력 경험시 '설득하거나 고친다'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비율은 17.0%로 선행연구결과인 18.9%보다 1.9%포인트 감소한데 반해 '참고 산다' 등 소극적인 대응방식은 4.4배나 높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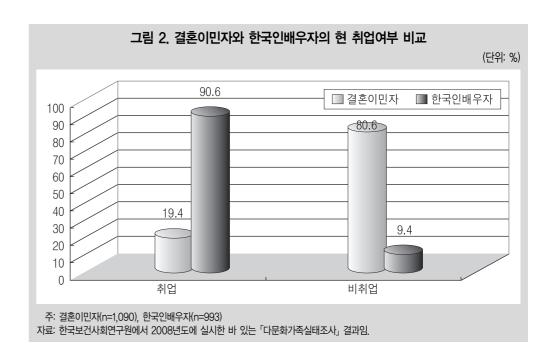
| 표 6.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부부폭력 경험시 대응형태 비교 | | | | | | | | (단위: %, 명) | | |
|--|-------------------|-------------------------------|-----------|-------------|------------|-------------|------------------|---------------------------|-----|--------------|
| | ш | | | | 부부폭력 | 경험 있음 | | | | |
| 갼 | 부부 폭력 경험 없음 | 말로 설 득 하여 해결 | 싸워서 고침 | 일단 피하고 봄 | 그냥 참고 삼 | 본국으로 돌아감 | 별거 · 이혼 하자고 함 | 상담전화 1366, 상담 소를 방문 | 기타 | 계 (수) |
| 결혼이민자 | 53.4 | 13.2 | 3.8 | 5.4 | 16.7 | 1.2 | 2.3 | 2.0 | 2.2 | 100.0(1,057) |
| 한국인배우자 | 58.1 | 17.2 | 2.8 | 4.1 | 14.8 | 1.3 | 0.4 | 1.2 | - | 100.0(969)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 | | | | | | | | | |

2) 취업 및 경제생활

(1) 취업

결혼이민자는 현재 19.4%가 취업중이나 한 국인배우자는 90.6%가 취업중이다. 이는 결혼 이민자가 대부분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남성들로 구성된 한국인배우자에 비해 취업률 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 중 현취업자들의 직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종사자 및 기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서비스 종사자, 관리직 및 전문직 등의 순이었다. 한국인배우자도 단순노무직종사자 및 기타의 비율이 가장



34 _ 보건복지포럼 (2009. 5.) 이 달의 초점 _ 35

높았으며, 그 외 기능원·기계조작원, 농· 임 · 어업, 기술공 · 준전문가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배우자에 비해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관리자 · 전문가, 사무종사자, 판매종사자 등의 비율이 높았다.

현재 취업중인 결혼이민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임시근로자가 30.3%로 가장 많았으며, 일 용근로자인 14.3%까지 합할 경우 44.6%가 임 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직업의 불안정을 나타내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유는 자녀교육비 충당이 27.9%로 가장 높았으 며, 가족의 생계유지(24.7%), 생활비 보충 (20.8%) 등 생계와 관련된 이유가 상당수를 차 지하였다. 한국인배우자들이 일하는 가장 중요 한 이유로는 가족의 생계유지로 84.0%이었으 며, 생활비 보충까지 포함할 경우 89.0%가 생계 유지 등을 위해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 러움으로는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과 자녀양 육 부담, 가사부담 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한 국인배우자는 낮은 임금수준, 일이 고되고 힘 듬, 자녀양육 부담, 장시간의 노동시간 등의 순 이었다.

(2) 경제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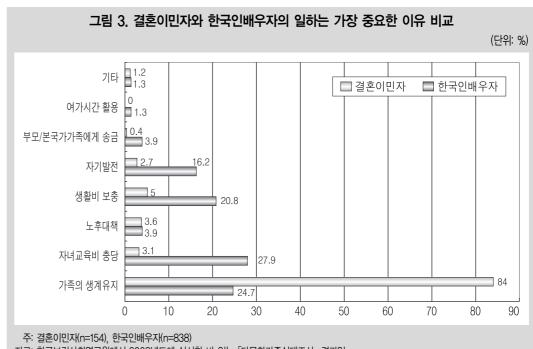
결혼이민자들의 가구소득 분포를 보면, 100~199만원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

| 표 7.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현 직종 분포 비교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명) |
| 구분 | 관리자 · 전문가 ¹⁾ | 기술공 · 준 전문가 | 사무 종사자 | 서비스 종사자 | 판매 종사자 | 농·임· 어업 | 기능원 · 기계 조작원 | 단순노무 종사자 · 기타 | 계(수) |
| 결혼이민자 | 15.9 | 10.2 | 8.5 | 18.2 | 7.4 | 11.9 | 3.4 | 24.4 | 100.0(176) |
| 한국인배우자 | 3.1 | 15.6 | 8.2 | 11.6 | 4.3 | 17.6 | 19.0 | 20.6 | 100.0(8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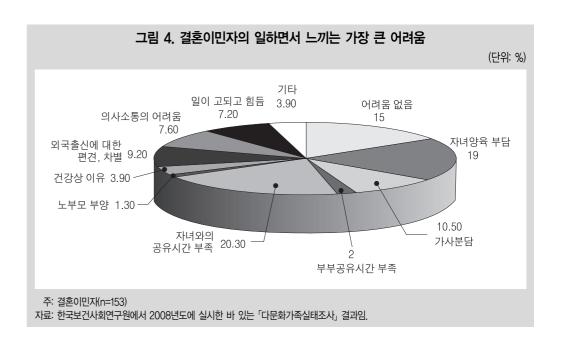
주: 1) 관리자·전문가에는 컴퓨터관리자, 건축 및 토목공학 전문가, 영양전문가, 정규학교 이외 교육기관 전문가, 행정전문가, 사회서비 스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 | 표 8.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종사상 지위 비교 | | | | | | | | | |
|---|-----------------------------------|------|------|------|------|------|------|------------|--|--|
| | (단위: %, 명) | | | | | | | | | |
| 구분 | 구분 고용주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자 무급가족 기타 계(수) | | | | | | | | | |
| 결혼이민자 | 1.7 | 18.9 | 30.3 | 14.3 | 10.3 | 10.3 | 14.3 | 100.0(175) | | |
| 한국인배우자 3.1 39.8 8.1 14.0 26.2 4.4 4.3 100.0(812) | | | | | | | | | |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 | | | | | | | |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36 보건복지포럼 (2009. 5.) 이 달의 초점 _ 37 음은 200~299만원이 31.2%이었다. 그러나 100만원 미만도 9.8%나 되어 10가구 중 1가구는 가구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소비에 있어서도 100~199만원이 52.1%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이상은 22.3%이었으나 100만원 미만도 25.6%나 되었다. 김승권 외(2006) 연구에서는 199만원 이하가 52.7%인데 비해 결혼이민자 가구는 77.7%로 상당수의 가구가 199만원 이하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만원 이상은 일반가구는 47.3%인데 비해 결혼이민자 가구는 22.3%에 불과해 가구소비에 있어서도 일반가구에 비해 결혼이민자 가구의 소비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구부채에 있어서는 부채가 없다는 가구는 54.7%이었으며[®], 부채가 있는 45.3%의 가구 중 3,000만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가구가 16.4%로 가장 많았다. 가구소득별로 부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

| | 표 9. 가구소득 및 가구소비 분포 | | | | | | | | |
|---|---------------------|-----------|-----------|----------|------------|--|--|--|--|
| (단위: %, 명) | | | | | | | | | |
| 구분 | 99만원 이하 | 100~199만원 | 200~299만원 | 300만원 이상 | 계(수) | | | | |
| 가구소득 | 9.8 | 44.7 | 31.2 | 14.3 | 100.0(892) | | | | |
| 가구소비 25.6 52.1 16.5 5.8 100.0(879) | | | | | | | | |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 | | | | | | | | |

| | 표 10. 가구소득별 가구부채 규모 | | | | | | | | | | |
|----|--|------|-------|---------|--------|--------|--------|------------|----------------|--|--|
| | 표 10. 기 (도기 보기를 기 (무지) 비보 (단위: % | | | | | | | | | | |
| | 구분 | 없음 | 300만원 | 300~999 | 1000~ | 2000~ | 3000만원 | ᅰᄉ | x ² | | |
| | 十 世 | ᆹᆷ | 미만 | 만원 | 1999만원 | 2999만원 | 이상 | 계(수) | , , | | |
| | 전체 | 54.7 | 4.9 | 7.5 | 8.9 | 7.5 | 16.4 | 100.0(797) | | | |
| 가 | 99만원 이하 | 55.8 | 13.0 | 6.5 | 3.9 | 7.8 | 13.0 | 100.0(77) | | | |
| 구 | 100~199만원 | 50.3 | 7.1 | 9.5 | 11.3 | 8.0 | 13.8 | 100.0(326) | 31,346** | | |
| 소 | 200~299만원 | 55.3 | 2.9 | 7.0 | 8.2 | 7.8 | 18.9 | 100.0(244) | 31,340 | | |
| 득 | 득 300만원 이상 52.7 0.9 4.5 8.9 11.6 21.4 100.0(112) | | | | | | | | | | |
| 주: | 주: ** p<01 | | | | | | | | | | |

⁷⁾ 김승권 외(2006) 연구와 비교할 경우 99만원 이하와 300만원 이상은 결혼이민자 가구보다 일반가구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100만 원~299만원은 일반가구보다 결혼이민자 가구의 비율이 더 높았음. 이는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99만원 이하의 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낮은 비율이나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의 비율도 일반가구 보다 낮아 결혼이민자 가구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나 부채규모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커지는 경 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채의 원인으로는 주거비 주택마련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생계비, 사업자금, 교육 비 등의 순으로 가구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반가구의 경우 주된 부채원인은 주거비·주 택마련, 사업자금, 생계비, 교육비 순으로 결혼 이민자와 일반가구 모두 주거비·주택마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그 다음 순으로 일반가구는 사업자금 인데 비해 결혼이민자는 생계비로 인한 부채의 비율이 높아 일반가구에 비해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건강 및 보건의료 이용

(1) 질병유무 및 의료기관 이용실태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결혼이민자가 23.0%, 한국인배우자는 27.3%로 결혼이민자보 다 4.3%포인트 높았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5분 의 1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하 는 취약계층임을 말해준다.

부부가 질병치료 때문에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결혼이민자가 85.9%, 한국인배우자는 90.9%로 질환자의 다수가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질환자의 10% 내외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층임에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되어서 국민

| | 표 11. 부채의 주된 원인 | | | | | | | | |
|---|---|-----|----------|-----|------|-----|-------|----|------|
| | (단위: %, 명) | | | | | | | | |
| | 구분 | 생계비 | 주거비·주택마련 | 교육비 | 사업자금 | 의료비 | 관혼상제비 | 기타 | 계(수) |
| | 전체 23.7 38.1 3.5 17.6 3.2 1.6 12.2 100.0(312) | | | | | | | | |
| 7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 | | | | | | | |

| 표 1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질병 유무 비교 | | | | | | | | | | |
|-------------------------------|---|------|--------------|--|--|--|--|--|--|--|
| (단위: %, 명) | | | | | | | | | | |
| 구분 | 구분 질병 있음 질병 없음 계(수) | | | | | | | | | |
| 결혼이민자 | 23.0 | 77.0 | 100.0(1,098) | | | | | | | |
| 한국인배우자 27.3 72.7 100.0(975) | | | | | | | | | |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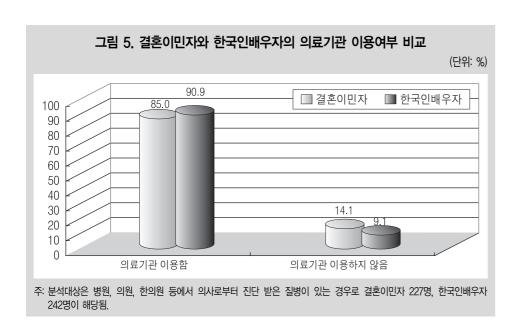
⁹⁾ 일반가구의 경우(김승권 외, 2006), 부채의 주된 원인으로 주거비/주택마련 50.1%, 사업자금 27.5%, 생계비 8.4%, 교육비 4.0% 등으로 결혼이민자에 비해 주거비/주택마련은 12.0%포인트, 사업자금은 9.9%포인트 높았고, 생계비는 15.3%포인트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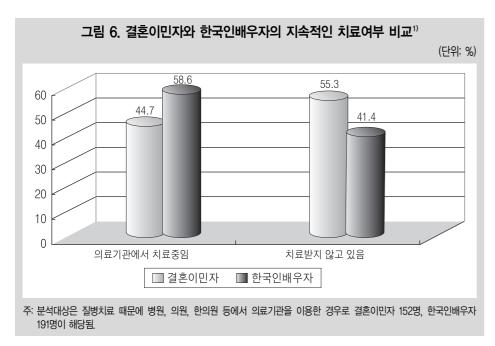
⁸⁾ 김승권 외(2006) 연구에서 가구 부채가 없는 가구는 53.1%로 결혼이민자 가구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그러나 부채규모 에 있어서는 일반가구의 부채규모가 결혼이민자가구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의 건강을 위해할 소지가 많아서 서비스 사각지 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모색되어야 한다.

질병을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비율은 결혼이

민자가 44.7%, 한국인배우자는 58.6%로 질환 자 중에서 과반수 정도가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액의 의료비가 요구되는 여건





하에서 의료보장 및 사회적 지원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공통적으로 치료 비가 없기 때문이었고 이외에 일을 중단할 경우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든지, 가족을 돌볼 사 람이 없는 것 등도 주요 이유로 응답하였다. 그 러나 한국인배우자의 10% 정도는 치료해도 나 을 것 같지 않다고 응답하여 보건의료서비스제 도를 불신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동 제도의 내실 화가 요구된다.

결혼이민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데 힘든 점을 보면 언어소통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이 2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교통의 접근성, 진료비 부담, 병원 갈 시간부족 등이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

료기관에서 치료받는데 힘든 점으로 결혼이민 자는 언어소통, 교통, 진료비, 정보·상담 등으로 나타났고, 한국인배우자는 이외에도 병원 갈 시간이 부족한 것도 치료받는 데 힘든 점으로 응답하였다. 의료기관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진과의 언어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비롯하여 교통편의서비스, 진료비부담 해소, 정보 및 상담 제공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4) 자녀양육실태

(1) 자녀양육형태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돌보는 주된 양육자는 결혼이민자 본인, 한국인배우자 또는 기타 가족 등으로 동 비율은 48.9%이었고, 다음은 보육시

| 표 1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주요 이유 비교 | | | | | | | |
|--|------------|-----------|--|--|--|--|--|
| (단위: %, | | | | | | | |
| 구 분 | 결혼이민자 | 한국인배우자 | | | | | |
| 치료비가 없어서 | 42,9 | 35.1 | | | | | |
| 일을 중단하면 수입이 줄기 때문에 | 9.2 | 19.1 | | | | | |
|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서 | 2.5 | 8.5 | | | | | |
| 의료기관까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 8.4 | 6.4 | | | | | |
| 식구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 | 10.9 | 1.1 | | | | | |
| 치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 | 5.9 | 13.8 | | | | | |
|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서 | 2,5 | 2.1 | | | | | |
|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 1.7 | - | | | | | |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 8.4 | 8.5 | | | | | |
| 기타 | 7.6 | 5.3 | | | | | |
| 계(수) | 100.0(119) | 100.0(94) | | | | | |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 | | | | | | |

| 표 1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대 | 네 힘든 점 비교 | | | | | |
|---|---------------|------------|--|--|--|--|--|
| | | (단위: %, 명) | | | | | |
| 구 분 | 결혼이민자 | 한국인배우자 | | | | | |
| 힘든 점 없음 | 32.4 | 33.6 | | | | | |
| 교통이 좋지 않아 문제 있음 | 13.4 | 15.6 | | | | | |
| 병원갈 시간이 부족함 | 7.7 | 17.6 | | | | | |
| 진료비를 감당하기 아려움 | 12,2 | 11.7 | | | | | |
| 언어소통을 하지 못하여 치료에 어려움이 있음 | 22,7 | 13.4 | | | | | |
| 절차가 복잡함 | 3.6 | 2.8 | | | | | |
|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상담을 받기 힘듬 | 4.5 | 3.7 | | | | | |
| 기타 | 3.5 | 1.6 | | | | | |
| 계(수) | 100.0(973) | 100.0(921) | | | | |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 | | | | | | |

설, 유치원 등의 기관이 37.4%이었으며,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6.4%로 나타났다. 서문희 외(2005)의 연구결과, 일반 가정에서의 미취학 아동의 보육 · 교육 서비스 이용률은 기관이용 이 5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개인교육이 29.7%, 혈연 20.9%, 비혈연 1.7%, 기타 0.2% 순 이었다. 다문화가정은 일반가정에 비해 기관이 용률이 낮은 데 비해 혈연이용률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결혼이민자가 취업한 경우는 보육시설, 유치원, 사설학원 및 한글교실 등 기관을 이용 한 비율이 65.8%로 높은 데 반해, 비취업인 경 우는 결혼이민자 본인 · 한국인배우자 또는 기 타 가족 등이 돌보는 비율이 56.0%로 높았다. 또한 아동이 방치되는 비율은 취업한 결혼이민 자가 7.7%로 비취업인 결혼이민자보다 1.4%포 인트가 높았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 별 다문화가정 아동의 주된 양육자는 통계적으 로 차이를 보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방과 후 돌봄형태는 본인

또는 배우자, 기타 가족이 돌보는 형태가 6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사설 또는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18.8%로 많았다. 이외에도 사설학원, 파출부·도우미 등을 활용하나 아이 혼자 방치되는 경우도 8.5%로 적지 않았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별 방과 후 돌봄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취업한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학교 또는 학원 등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41.7%로 높았고 아이가 혼자 방치되는 경우도 16.7%로 높은 데 반해비취업한 경우는 가족이 돌보는 형태가 60.2%로 높았으며 아이 혼자 지내는 비율은 4.6%로 낮았다. 따라서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일과가정을 양립하는 여성을 위한 효과 높은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표 15. 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별 다문화가정 아동의 주된 양육자 | | | | | | | | |
|-------------------------------------|------------|------------|------------|----------------|--|--|--|--|
| | | | | (단위: %, 명) | | | | |
| 구분 | 전체 | 취업 | 비취업 | x ² | | | | |
| 돌보는 사람 없음 | 6.5 | 7.7 | 6.3 | | | | | |
| 본인 · 배우자 또는 기타 가족 | 48.9 | 21.7 | 56.0 | | | | | |
| 친구 | 3.5 | 2.1 | 4.0 | | | | | |
| 위탁모·파출부·도우미 | 0.6 | 1.4 | 0.4 | | | | | |
| 보육시설 | 22.6 | 36.4 | 18.6 | 69.470*** | | | | |
| 유치원 | 14.8 | 25.9 | 12,1 | 09.470 | | | | |
| 사설학원 | 0.6 | 2.1 | 0.2 | | | | | |
| 한글교실 | 0.8 | 1.4 | 0.7 | | | | | |
| 기타 | 1.7 | 1.4 | 1.8 | | | | | |
| 계(수) | 100.0(681) | 100.0(143) | 100.0(554) | | | | | |

주: ***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 표 16. 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별 다문화가정 아동의 방과 후 돌봄형태 (단위: %, 명) | | | | | | | | | | | |
|--|----------------|-----------------|----------|-------------------|-------------------|----------|-----------------|-----------------|-----|------------|----------------|
| 구분 | 아이 혼자 지냄 | 본인 또는 배우자 | 기타 가족 | 시설 방과후 프로그램 |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 사설 학원 | 파출부 · 도우미 | 본인 모국인 친구 | 기타 | 계(수) | x ² |
| 전체 | 8.5 | 56.3 | 6.7 | 9.4 | 9.4 | 6.7 | 0.4 | - | 2.7 | 100.0(224) | |
| 취업여부 | | | | | | | | | | | |
| 취업 | 16.7 | 29.2 | 8.3 | 14.6 | 16.7 | 10.4 | - | - | 4.2 | 100.0(48) | 16,819* |
| 비취업 | 4.6 | 60.2 | 8.3 | 6.5 | 8.3 | 8.3 | _ | - | 3.7 | 100.0(108) | 10,019 |
| 자료: 한국보건사회 | 1연구원에 | 서 2008년 | 도에 실시 | 한 바 있는 | 「다문화기 | 족실태조기 | 나, 결과임, | | | | |

다문화가정 아동을 방과 후의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이유는 생업에 바빠서가 5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학습지도를 못해서 27.6%, 한국 어 수준이 낮아서 10.5% 등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취업한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생업에 바쁘 기 때문에 방과 후에 아동을 돌보지 못하는 반 면, 비취업인 결혼이민자는 학습지도를 못하거 나 한국어 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나타나서 취업 여부별 방과 후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이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자녀양육상의 어려움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은 결혼

| II. EL- | | | E-1-10 -1 | 0-1 0-1 | T E | = | _ *!!! |
|---------|-----|------|-----------|--------------|---------|------|----------------|
| | | | | | | | (단위: %, 명 |
| 구분 | 생업에 | 학습지도 | 한국어 | 자녀와 함께 살지 | 기타 | 계(수) | x ² |

파 17 경호이미자이 취업여보병 다무하가전 아독이 반과 호 보고가 독보지 모하는 이오

| 구분 | 생업에 바빠서 | 학습지도 못해서 | 한국어 수준이 낮아서 | 자녀와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 기타 | 계(수) | x² |
|------|------------|-------------|----------------|------------------------|------|-----------|----------|
| 전체 | 52.6 | 27.6 | 10.5 | 1.3 | 7.9 | 100.0(76) | |
| 취업여부 | | | | | | | |
| 취업 | 76.7 | 16.7 | 3.3 | ı | 3.3 | 100.0(30) | 12,142** |
| 비취업 | 33.3 | 39.4 | 15.2 | - | 12.1 | 100.0(33) | 12,142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이민자는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흡한 것이 30.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경제적으로 빈 곤하여 양육비, 교육비 지출이 힘든 점, 자녀양 육을 둘러싼 배우자와 그 가족 등과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의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은 한국어소통 능력 미 흡, 양육비 · 교육비 지출, 자녀양육자 · 보육시 설의 부재, 자녀양육 방식의 갈등 등으로 정리

| 표 18.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자녀양육상의 어려움 비교 | | | | | | | |
|---|------------|------------|--|--|--|--|--|
| | | (단위: %, 명) | | | | | |
| 구 분 | 결혼이민자 | 한국인배우자 | | | | | |
| 아무런 어려움 없음 | 10.3 | 21.8 | | | | | |
| 어려움 있음 | 89.7 | 78.2 | | | | | |
| 자녀 양육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 (14.4) | (11.1) | | | | | |
| 한국어소통능력이 미흡함 | (30.2) | (15.3) | | | | | |
| 아이를 돌보아 줄 사람 또는 보육시설이 없음 | (6.7) | (26.3) | | | | | |
|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양육비, 교육비 지출이 힘듬 | (17.1) | (3.4) | | | | | |
| 아이의 학업성적이 낮거나 학교생활 부적응이 심함 | (3.3) | (8.7) | | | | | |
| 아이의 건강문제 | (4.9) | (0.1) | | | | | |
|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등 문제행동 | (0.9) | (4.3) | | | | | |
|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 (1.7) | (0.3) | | | | | |
| 자녀와의 갈등 | (1.5) | (5.6) | | | | | |
| 학업지도 | (7.1) | (1.9) | | | | | |
| 정서 · 행동상의 어려움 | (0.9) | (1.2) | | | | | |
| 기타 | (0.9) | - | | | | | |
| 계(수) | 100.0(777) | 100.0(678) | | | | |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 | | | | | | |

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3.8%). 위하여 한국어교육, 경제적 지원, 돌봄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5) 가족부양

생존해 계신 배우자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들은 시부모 또는 장인 · 장모와 함께 비동거하는 경우는 56.1% 이었으며, 시부모 또는 장인 · 장모와 함께 동거 하는 경우는 18.8%이었고, 시어머니 또는 장모 님 하고만 동거하는 경우는 22.1%, 시아버지 또 는 장인 만 동거하는 경우는 2.9%로 상당수 결 혼이민자들이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과 청소 등 일반적인 어른수발에도 어려움을 호소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과 동거할 경우 부양상 의 어려움에 대해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양상 어려움이 없 다는 경우는 29.5%이었고, 나머지 70.5%는 부 모님 부양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부양상 어려움이 있는 비율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농 · 어촌보다 3.2%포 인트가 높았고, 결혼이민자가 취업한 다문화가 족이 비취업인 경우보다 8.8%포인트 높았다.

결혼이민자의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34.0%)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그 다음은 노인 돌보기로 즉, 식사, 세탁,

표 19.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 부모님과의 동거여부 비교

(다이: 0/ 명)

| | | | | | (LTI /0, O) |
|--------|---------------------------|------------------|------------------|----------------------------|-------------|
| 갼 | 시부모 (장인 · 장모) 모두 동거 | 시아버지 (장인)만 동거 | 시어머니 (장모)만 동거 | 시부모 (장인 · 장모) 모두 비동거 | 계(수) |
| 결혼이민자 | 18.8 | 2.9 | 22.1 | 56.1 | 100.0(918) |
| 한국인배우자 | 10.8 | 1.6 | 13.8 | 73.8 | 100.0(812)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표 20.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 부양상 어려움 유무

(단위: %, 명)

| 구분 | | 전체 | 지 | 역 | 취업여부 | | |
|--------|----------------|------------|------------|------------|-----------|------------|--|
| | | 전세 | 도시 | 농·어촌 | 취업 | 비취업 | |
| 결 | 어려움 없음 | 29.5 | 27.8 | 31.0 | 20.6 | 29.4 | |
| 호 이 | 어려우 있으 70.5 | | 72.2 | 69.0 | 79.4 | 70.6 | |
| 민 | 계(수) | 100.0(376) | 100.0(176) | 100.0(200) | 100.0(63) | 100.0(323) | |
| 자 | x ² | | .4 | 49 | 2.0 |)15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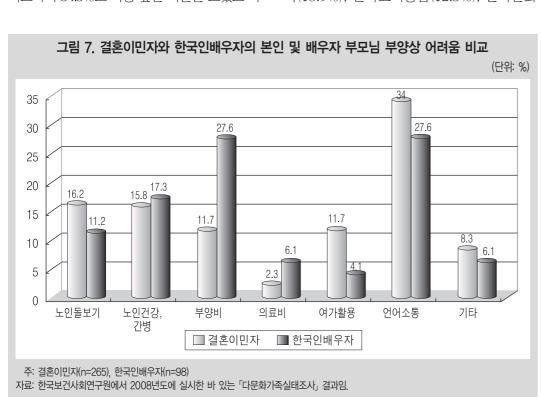
44 보건복지포럼 (2009. 5.) 이 달의 초점 45 하고 있다(16.2%). 그 외 노인건강이나 간병 문제(15.8%), 노인부양비 문제(11.7%), 본인의 여가활동 상의 제약(11.7%) 등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인배우자는 언어소통 어려움과 부양비 문제가 각각 27.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노인건강 · 간병문제(17.3%), 노인돌보기 문제(11.2%) 순으로 지적되었다.

3. 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

1) 복지서비스 필요도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한국 어교육이 5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

음은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 제공이 11.6%로 높았으며, 또한 10% 미만이나 자녀를 위한부모상담 및 교육 등에 대한 서비스의 필요도를보였다. 그리고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5.5%), 한국요리강습(4.1%) 등도 희망하였다. 2순위는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 제공이 19.6%로 가장높았고, 다음은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이 13.2%, 일자리알선이 13.1%, 한국요리강습이 10.8%이었다. 그리고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관련, 컴퓨터 · 정보화교육은 10% 미만의 필요도를 보였다. 설동훈 외의연구(2006)와 비교하면 가장 필요한 이민자 사회통합서비스는 한국어교육이 39.7%로 가장높았고, 다음은 취업교육훈련(15.2%), 정보화교육(13.9%), 한국요리강습(12.5%), 한국문화



(7.0%), 법률상담(4.2%), 의료상담(3.6%), 가족관계 상담(2.3%) 순으로 높았다. 결혼기간별로는서비스의 필요도에 차이를 보였다.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는비율이 73.4%로 결혼이민자의 3분의 2 이상이응답하였고, 나머지 서비스는 5% 미만으로 미미하였다. 결혼기간이 2~4년 미만인 경우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필요도가 59.8%이었고, 다음은 자녀육이 및 교육지도 도움 제공에 대한 필요도가 10.7%로 높았다. 또한 4~6년 미만의 결혼이민자의 서비스 필요도는 한국어교육, 자녀육이 및 교육지도 도움제공, 자녀를 위한 부모상

담 및 교육 등 자녀에 대한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시기로 나타났다. 10% 미만이나 한국요리강습,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에 대한 필요도가 나타났다. 결혼기간이 6년 이상인 결혼이민자의 욕구도 결혼 4~6년 미만인 결혼이민자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결혼주기별로 서비스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 부대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

결혼이민자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부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서비스

| 표 21. 결혼기간별 결혼이민자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 | | | | | | | | | |
|--|--------------|--|---------|---------|-------|--|--|--|--|
| (단위: %, | | | | | | | | | |
| 구 분 | 전체 | 2년 미만 | 2~4년 미만 | 4~6년 미만 | 6년 이상 | | | | |
| 한국어교육 | 54.5 | 73.4 | 59.8 | 44.9 | 31,3 | | | | |
| 한국요리강습 | 4.1 | 2.9 | 2.8 | 7.9 | 6.0 | | | | |
| 한국문화관련 | 2.9 | 2.2 | 3.2 | 3.1 | 3.2 | | | | |
|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 2.9 | 1.9 | 2.8 | 3.9 | 3.6 | | | | |
|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 7.2 | 4.2 | 5.0 | 11.8 | 10.7 | | | | |
|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 0.4 | - | 1.4 | - | - | | | | |
| 법률상담 및 지원 | 1,1 | 1.0 | 1,1 | 0.8 | 1.6 | | | | |
| 의료상담 및 지원 | 1,1 | 0.3 | 1,1 | 0.8 | 2.8 | | | | |
| 컴퓨터 · 정보화 교육 | 3.0 | 1.9 | 3.6 | 1.6 | 3.6 | | | | |
|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 5.5 | 3.2 | 4.6 | 5.5 | 7.9 | | | | |
| 일자리 알선 | 3.4 | 2.6 | 2.5 | 2.4 | 4.8 | | | | |
| 생활정보제공 | 1,1 | 0.6 | 0.7 | - | 2.4 | | | | |
|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 제공 | 11.6 | 4.8 | 10.7 | 16.5 | 20.6 | | | | |
| 공공부조서비스 제공 | 0.6 | 0.3 | 0.4 | 0.8 | 1.2 | | | | |
|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 제공 | 0.2 | 0.3 | _ | _ | 0.4 | | | | |
| 기타 | 0.2 | 0.3 | 0.4 | _ | - | | | | |
| 계(수) | 100.0(1,063) | 100.0(312) 100.0(281) 100.0(127) 100.0 | | | | | | | |
| x ² 145,966*** | | | | | | | | | |
| 자근·하구보거사하여구워에서 2008년도에 실시하 바 이느「다므하가조신태조사, 경제이 | | | | | | | |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받는 동안 자녀를 돌보아주는 보육시설을 응답한 비율이 21.2%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배우자 또는 가족의 허락·지원(15.7%), 교육서비스의 경우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별 강의 제공(13.1%),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12.2%) 등의 순으로 욕구가 높았다. 결혼이민자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가족의 허락·지원을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은 부부및 가족관계에서 불평등하고 비인권적인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결혼기간이 4년 미만까지는 공통적으로 보육시설, 배우자 또는 가족의 허락·지원, 단계별 교육서비스 제공, 서비스 정보제공, 비용제공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다. 또한 결혼기간이 4~6년 미만인 경우는 보육시설, 배우자 또는 가

족의 허락 · 지원, 단계별 교육서비스 제공 외에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도가 높았다. 결혼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이었고 다음은 보육시설, 비용제공, 단계별 교육서비스 제공, 가정방문식 교육제공, 배우자 또는 가족의 허락 · 지원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결혼기간별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유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4. 정책방안

1)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지원방안

본 연구결과, 다문화가족의 결혼 후 가장 큰

| 표 22. 결혼기간별 결혼이민자의 국가 또는 사회에 | 시 세상이 | 는 시미스들 | 발기 위이 | | 요안 노줌 (단위: %, 명) | | |
|--------------------------------|--------------------------|------------|------------|------------|----------------------------|--|--|
| 걘 | 전체 | 2년 미만 | 2~4년 미만 | 4~6년 미만 | 6년 이상 | | |
| 배우자 또는 가족의 허락·지원 | 15.7 | 17.8 | 18.5 | 14.5 | 10.4 | | |
| 교통편 | 5.0 | 6.9 | 5.8 | 5.1 | 2.1 | | |
| 다양한 서비스 제공시간 | 6.9 | 7.2 | 5.8 | 6.0 | 8.7 | | |
|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 12,2 | 10.5 | 8.1 | 11,1 | 19.5 | | |
| 서비스 받는 동안 자녀를 돌보이주는 보육시설 | 21,2 | 19.6 | 27.7 | 23.9 | 17.0 | | |
| 교육서비스의 경우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별 강의 제공 | 13.1 | 13.0 | 13.1 | 16.2 | 11.2 | | |
| 서비스 제공기관의 접근성 | 2.5 | 3.6 | 2.7 | 0.9 | 1.7 | | |
| 학습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가정방문식 교육 서비스 제공 | 6.6 | 4.0 | 3.8 | 8.5 | 10.8 | | |
| TV ·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 1.7 | 1,1 | 1.5 | 4.3 | 1.2 | | |
| 통역서비스 제공 | 4.2 | 5.8 | 3.1 | 3.4 | 2.5 | | |
| 비용 제공 | 9.4 | 9.1 | 8.5 | 3.4 | 14.1 | | |
| 기타 | 1.5 | 1.4 | 1.5 | 2.6 | 0.8 | | |
| 계(수) | 100.0(1,063) | 100.0(276) | 100.0(260) | 100.0(117) | 100.0(241) | | |
| x ² | x ² 77.121*** | | | | | | |
| | | | | | | | |

어러움으로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을 응답한 비 율이 결혼이민자 29.2%. 한국인배우자 27.4% 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언어생활소통 의 미숙은 자녀양육, 가족부양을 비롯하여 병원 이용, 이웃과의 교제, 직장생활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언어소통의 어려움은 욕구에도 반영되어 다문 화가족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한국어교육이 54.5%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관계 증진 및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언 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언어교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방송교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간대별로 제공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국적 및 수 준별로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 지원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인배우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언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이 민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결혼이민 자의 국적별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교육프 로그램이 개발 ·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언 어교육서비스의 홍보 · 안내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한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내 기관 및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 적인 아내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사후적 지원 강화

본 연구 결과, 지난 1년간 한국인배우자에 의한 결혼이민자의 폭력발생률은 47.8%로 부부 2 쌍 중 한 쌍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폭력에 대응하는 방식은 그냥 참고 살거나 일단 피하고 본다 등 소극적인 태도가 22.1%로 5분의 1이 해당되었다. 그리고 부부폭력을 경험 한 결혼이민자 중에서 이주여성 상담소 및 상담 전화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은 비율은 2.0% 에 불과하였다. 한편 결혼이민자는 필요한 서비 스로 1% 미만으로 미미하나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을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는 폭 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서 폭력의 위험에 지 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한편, 전문적인 서비스 에서도 배제되어 가정생활을 유지하기는 힘들 며 결과적으로 가족해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 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국적미취득자가 많아서 폭력가해자인 한국인배우자에게 일방적인 불 이익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소수인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도 열악하다. 따라서 폭력 피 해 결혼이민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가족해 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지원이 요구된 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체류 및 생활안정 등을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국적취득 과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거주요건을 동일하게 2년으로 규정하여 결혼이민자가 본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도록 선택의 기 회를 보장한다. 또한 자녀출산 후 한국인배우자 가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이혼할 경우 자녀면접 및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체류 및 취업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폭력 피해 결혼이 민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전문상담제도를 정 비한다.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전문적 상담과 보호지원을 위하여 이주여성쉼터와 상담소를 확충하고, 상담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동 시통역시스템과 결혼이민자 전문상담원 제도

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자조집단 활성화를 통한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자조집단을 구성하여 폭력사례 및 정보·지식 등을 공유하고 연대하여 폭력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인다.

3) 다문화가족의 기본생활보장 및 소득보장 강화

본 연구결과,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 구의 비율이 9.8%인 한편, 가구부채 비율은 45.3%이었고. 부채원인으로 생계비가 차지하 는 비율이 23.7%이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취업률은 한국인배우자는 90.6%. 결혼이민자 가 19.4%로 결혼이민자는 5분의 1에도 못 미치 는 수준이었다. 또한 취업한 경우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음에 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17.6%에 불과 하였다. 이는 다수의 저소득 다문화가족이 기초 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소득보장 의 여건 또한 열악하여 빈곤가족으로 전락할 가 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빈곤예방을 위하여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제도 적 장치와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요구된다. 이 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기초 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에 무자녀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를 적용 ·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아울러 자활사업 대상에도 적용하여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자활능력을 제고한다. 둘째,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프로 그램(IDA)을 제공한다. 금융소외 계층인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저축형태의 금전적인 인센티 브를 제공하여 자산형성을 촉진한다. 동 제도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소액저축을 할 경우 국가에서 일정비율의 정부지원금 및 민 간기부금을 지원하는 개인의 금융계좌의 성격 을 가진다. 셋째, 맞춤형 직업훈련교육을 강화 하고 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 특성을 고려한 직 종을 개발한다. 즉 결혼이민자의 특성 및 지역 을 고려하여 취업능력 향상 교육과정을 강화하 고,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다문화강 사, 원어민 외국어강사, 통·번역사, 보육교사 등 다양한 직종을 개발한다. 넷째, 지역 중심의 취업인프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결혼이민자 의 특성을 고려한 창업형 자립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4) 다문화가족의 기본의료보장

본 연구결과, 질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결혼이민자는 23.0%, 한국인배우자는 27.3%이었고, 질병 때문에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결혼이민자는 85.9%, 한국인배우자는 90.9%이었으나 질병 치료를 중단한 비율은 결혼이민자가55.3%, 한국인배우자는 41.4%로 다문화가정의 과반수 정도가 중도에 질병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를 중단한 이유는 치료비가 없기 때문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족을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서, 일을 중단하면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의료기관까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등으로 다양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는데 가장 힘든 점은 언어소통이 안되기 때문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교통이 불편함, 진료비용 부 담. 병원 갈 시간이 부족함 등이었다. 이외에도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상담받기가 힘듬. 절차가 복잡함 등도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열악한 보건 의료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기본의료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보장 사각지대인 다 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의료비지원의 적용을 확 대한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병 원, 입원비 등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한다. 또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 비를 지원하되 진료비용은 사례별로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맞춤형 방문관리 서비스의 대상자를 확대한다. 의료기관 및 의료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 · 어촌지역, 오지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 상으로 방문관리서비스 대상자의 발굴을 강화 한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의료기관 이용시 통 역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이민자의 밀집 지역 을 중심으로 의료지관을 지정하여 통역인력을 배치하고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되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수를 점차 확대한다.

5)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지원 확대

본 연구결과,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은 한국어소통의 미흡이 3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양육비, 교육비 지출부담, 자녀양육을 둘러싼 배우자와 가족과의 갈등으로 나타

났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돌보는 주 된 양육자는 부모 또는 가족이 48.9%. 기관이 38.8%로 전문 보육 ·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 율이 저조하였다. 또한 방과 후에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돌보는 비율은 부모 또는 가족이 63.0% 이었고, 학교 · 기관은 25.5%이었으며, 아이혼 자 방치되는 경우도 8.5%이었다. 따라서 다문 화가정의 아동은 전문적인 교육망에서 체계적 인 교육을 받기보다는 비전문적인 교육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자녀양육환경은 저출산시대에 미래세대의 건 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양육지 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 자 너의 양육화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자녀단위의 언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한다. 부모와 함께 하는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단계 별로 한국어 학습교재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그 리고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둘째, 다문화 가족의 양육비용 부담완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보육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단계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다. 셋째,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 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정 부모에게 다국어로 된 보육·양육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지원기관에서는 아동양육에 대한 교육콘텐츠 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그리고 부모중심의 자조 모임을 구성하여 자녀양육 정보를 교환한다.

6) 가족부양 부담 완화 방안

본 연구결과, 다문화가족의 가족유형에는 부 상과 경제적 연 부나 부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외에 완화하는 방안연 한국인배우자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비율이 과 같다. 첫째, 43.8%로 높았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교육을 강화한 농ㆍ어촌의 한국인 남성 배우자와 결혼한 비율 간병으로 배우 이 높아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는 비율 또한 높 는 갈등문제 등 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 키기 위한 가족 국인 배우자의 부모부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둘째, 다양한 된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언어소 다. 다문화가족 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어려움과 함께 인환자를 돌보 노인들의 일상적인 수발, 간병과 부양비 문제 고 돌봄 비용어 등도 부양 상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같 한 의료용품 대 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다문화가족은 정신적인 지원한다. 圖

같등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관계 향상과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가족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통합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민자의 노인수발 및간병으로 배우자나 부모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 등을 해결하고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가족통합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둘째, 다양한 경제적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의 비용부담 완화 방안으로 노인환자를 돌보는 가족에는 케어수당을 지급하고 돌봄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의료용품 대여서비스를 확대하고 물품 등을 지원한다.